

아동 학대와 아동 방치를 인지하고 신고하기  
자원봉사자를 위한 자주 받는 질문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우리 교육구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자원하여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커뮤니티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 안전한 환경을 육성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의무화된 자원봉사자를 위한 트레이닝과 신원조회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FAQ)과 답을 준비하였습니다.

방문자 관리 시스템:

질문 1: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학교 방문자는 학교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1: 학교 업무시간에 학교를 방문하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모든 방문자는 계속 MCPS 방문자 관리 시스템(MCPS Visitor Management System-VMS)을 통해 학교 방문을 등록해야 합니다.

질문 2: MCPS 방문자 관리 시스템(MCPS Visitor Management System-VMS)이란 무엇입니까?

답 2: VMS 는 방문자의 운전면허증이나 주가 발급한 신분증을 스캔하여 주에 등록되어 있는 성범죄자 리스트와 대조하게 됩니다. VMS 는 이름표를 작성하여 학교를 방문한 모든 사람이 이름표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자원봉사자가 받아야 하는 트레이닝:

질문 3: 자원봉사자는 자원 봉사자와 계약자를 위한 아동 학대와 아동 방치를 인식하고 신고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 3: 예. 학교와 학생을 정기적으로 돕는 모든 자원봉사자와 현장학습에 동행하는 자원봉사자는 모두 아동 학대와 아동 방치의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행사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됩니다.(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 정책 JHC, 아동학대와 방치(Child Abuse and Neglect)와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규정 IRB-RA, 학교에서의 자원봉사(Volunteers in Schools)

질문 4: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4: 이 아동 학대와 아동 방치 교육은 온라인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됩니다. 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Google 크롬을 지원합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childabuseandneglect](http://www.montgomeryschoolsmd.org/childabuseandneglect))

질문 5: 학교를 돕는 사람은 모두 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 5: 현재는 정기적으로 학교를 돕는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아동 학대와 방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역 사회원 모두가 이 중요한 교육에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이는 큰 행사를 돕거나 학교 교직원의 감독하에 일회성 행사를 돕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듣지 않아도 되는 자원봉사 활동의 예입니다. (철저한 리스트는 아님):

MCPS 교직원이 감독하는 교실에서의 초대 낭독자와 강사

고등학교/대학교 입학담당과 취업, 대학 박람회의 자원봉사자

학교 축하행사(퍼레이드 등)를 참관하거나 반에서의 파티를 도우러 온 학부모/후견인 또는 친척

큰 행사에서 매점과 표 판매소에서 자원봉사하는 학부모/후견인

자원봉사가 받는 교육은 어떤 것입니까?

질문 6: 자원봉사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은 언제 준비됩니까?

답 6: 자원봉사자용 교육 프로그램은 온라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childabuseandneglect](http://www.montgomeryschoolsmd.org/childabuseandneglect).

질문 7: MCPS 교육을 2016-2017 학사연도에 마친 경우, 2017-2018 년도에도 다시 수강해야 하나요?  
답 7: 아니요. 만약, MCPS 에 작년도에 교육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면, 2017-2018 년도는 추가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은 3 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자원봉사자 트레이닝을 받은 해가,  
2016-2017 이면 2020-2021 에 갱신  
2017-2018 이면 2020-2021 에 갱신  
2018-2019 이면 2021-2022 에 갱신

질문 8: 모든 자원봉사자가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 8: 모든 자원봉사자는 아동 학대와 아동 방치 온라인 교육을 웹사이트를 통해 교육을 이수하고 온라인으로 확인을 받게 됩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childabuseandneglect](http://www.montgomeryschoolsmd.org/childabuseandneglect))

학교는 통역 등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온라인 교육을 사용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개인 또는 소그룹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후견인은 편의 제공의 필요로 인해 참여가 제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교가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교는 참석자의 이름과 연락 정보, 이메일을 적어 자원봉사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기 위해 Office of Student and Family Support and Engagement (OSFSE) (이메일 [OSFSE@mcpsmd.org](mailto:OSFSE@mcpsmd.org))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9: 만약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장애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답 9: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교에 적절한 경우, 도움이나 조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OSFSE 에 상의합니다.

질문 10: 온라인 자원봉사자용 교육은 여러 언어로도 제공되나요?  
답 10: 예. 온라인 트레이닝은 현재 한국어와 함께, 스페인어, 중국어, 불어, 암하라어, 베트남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질문 11: 자원봉사자가 교육을 이수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 11: 자원봉사자가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참석자 기록에 등록이 되며 MCPS 는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 12: 자원봉사자가 교육을 받고 나면 학생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나요?  
답 12: 네. 자원봉사자는 학교가 정한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질문 13: 학부모/후견인이 자녀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이 아동 학대와 방치의 인식, 보고,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 13: 아니요. 자녀와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할 학부모/후견인은 정기적인 자원봉사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질문 14: 학부모/후견인이 만약 학교와 쉬는 시간에 도움을 제공할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 14: 예. 학교에서 또는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학부모/후견인은 학교에서의 자원봉사 전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질문 15: MCPS 학생인 자원봉사자도 아동 학대와 아동 방치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 15: 아니요. MCPS 학생인 자원봉사자는 MCPS 교직원이 감독하에 있어야 하며 교직원의 감독하에 일을 합니다.

질문 16: 교생, 학생 교사, 인턴은 아동 학대와 아동 방치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 16: 예. 교생(학생교사)과 인턴은 모두 아동 학대와 방치의 인식, 보고,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인 지문 채취와 신원 조회:

질문 17: 자원봉사자들에게 요구되는 신원조회는 어떤 것입니까?

답 17: 다음은 자원봉사자의 항목으로 지문채취와 신원조회가 의무적으로 요구됩니다.

자원봉사인 코치

6 학년 야외 환경 학습 프로그램(Outdoor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Outdoor Education)숙박에 수행하는 인솔자

숙박하는 현장학습에의 자원봉사자

학교 시간보다 긴, 연장된 현장학습(예: 먼 곳이나 타주에의 현장학습)에의 인솔 자원봉사자는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기록조회가 의무화되어 있는 현 연방, 주, 카운티 법집행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MCPS 신원조회에서 면제됩니다. 그러나 근무하는 법집행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지문채취 면제를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18: 자원봉사자가 신원조회를 어디에 가서 받아야 하며,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답 18: 지문채취와 신원조회는 다음 기관에서 예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The Office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OHRD), 주소: 45 West Gude Drive, Rockville, Maryland 20850, 301-279-3276.

American Identity Solutions (AIS), 장소:

6701 Democracy Boulevard, Suite 110, Bethesda, Maryland 20817, 301-571-9479

12501 Prosperity Drive, Suite 200, Silver Spring, Maryland 20904, 240-670-7952

7361 Calhoun Place, Rockville, Maryland 20855, 301-296-4499

신원조회 절차는 약 4 주 정도 걸립니다.

질문 19: 신원조회에 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답 19: 자원봉사자는 신원조회를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OHRD 수수료는 54 불입니다. AIS 의 경우는 59 불입니다. 경우에 따라 학교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이 비용을 지불해줄 경우가 있습니다.

야외 환경 학습 프로그램 숙박 인솔자는 OHRD 에서의 지문채취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AIS 를 사용하는 학부모님은 \$20 을 지불합니다.

자원봉사 코치는 Athletic Department 와의 조정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질문 20: 작년 신원조회를 마친 경우, 다시 신원조회를 해야 하나요?

답 20: 학부모/후견인/지역사회원이 2016-2017 학사연도에 MCPS 에서 신원조회를 받은 경우, 2017-2018 년도에 다시 신원조회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21: 학교의 학부모, 교사,학생 연합(Parent Teacher (Student) Association-PTA/PTSA)이 후원하는 방과후 활동이나 강화학습 프로그램 또는 다른 프로그램 제공자는 MCPS 계약자에 해당되어 지문채취/신원조회를 받아야 하나요?

답 21: 학교가 후원하는 행사에 한해서만 지문채취와 신원조회를 요구합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이 MCPS 가 지원 또는 후원할 경우, 또는 MCPS 가 계약자 중 일부일 경우, (예: 학교장의 서명이 계약서에 있을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자가 직접, 교직원의 감독 및 제한 없이 학생과 MCPS 소유 건물에서 함께 있을 경우, MCPS 신원조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학교가 후원하지 않거나 PTA/PTSA 또는 다른 기관의 단독 후원 계약자의 경우, 또는 관계 부처 간의 Interagency Coordinating Board(ICB)가 주선할 경우, MCPS 는 지문채취와 신원조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PTA/PTSA 또는 ICB 는 추가로 계약자에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22: 승인받았는지 여부는 누가 알려주나요?

답 22: 자원봉사 후보자는 우편으로 신원조회 결과를 받게 됩니다. MCPS OHRD 는 각 케이스를 검토하여 성범죄자, 아동 성 학대 범죄자, 폭력범죄와 마약과 약물에 관련된 범죄자 및 다른 모든 범죄 기록 등, MCPS 학생의 안전과 보안에 영향을 줄 만한 모든 기록을 확인합니다. OHRD 는 자원봉사 후보자의 신원조회 결과 내용을 학교 교직원과 자세히 나누지는 않습니다.

질문 23: 자원봉사자 교육과 신원조회에 관한 질문은 누구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답 23: 자원봉사 요건에 관한 질문이나 염려점은 자녀의 학교로 연락해주시요. 학교 수준에서 해결되지 않는 염려점은 학교에 문의한 후도 질문이 있을 경우는, OSFSE 의 Dr. Jonathan T. Brice, associate superintendent (전화: 240-453-2426)에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4: MCPS 건물에서 근무하는 Montgomery College 직원은 이 의무사항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답 24: 이중 등록 프로그램(dual enrollment program)에서 일하는 Montgomery College 직원은 고용 전에 지문날인을 포함한 신원조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학교 건물에서 근무할 때는 Montgomery College 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여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 25: Montgomery County Government (MCG) 직원에게는 이 의무사항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답 25: 간호사, 보건 테크니션 등 MCG 고용인은 고용 전에 지문날인을 포함한 신원조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학교 건물에서 근무할 때는 MCG 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여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Linkages to Learning program 에 있는 카운티 직원을 위해 MCPS 는 요건을 충족한 신원조회 후,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